

(재)전주관광재단 제 2026-11호

2026 홍콩·선전 K-관광 로드쇼(B2B) 참가 추진 계획



관광마케팅팀

2026 홍콩·선전 K-관광 로드쇼(B2B) 참가 추진 계획

- (관광 콘텐츠 홍보 및 B2B 네트워크 구축)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6 중화권 K-관광 로드쇼(B2B)」 참가를 통해 현지 여행사·OTA·협회 등과 1:1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하고, 전주 관광자원 및 체류형 콘텐츠를 집중 홍보하고자 함.
- (테마형 관광시장 대응 및 수요 창출 기반 마련) 테마형 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전주 한옥마을·미식·전통문화·체험 콘텐츠 등 전주의 관광자원을 홍콩·중국(선전) 시장에 적극 소개하고, 실질적인 방문 수요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 배경

- 중국·홍콩 등 단체관광 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지 주요 여행사 및 OTA 대상 B2B 상담을 통해 단체관광과 개별관광(FIT)을 아우르는 상품 개발 및 수요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체류형·테마형 관광 전환을 위해 신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현지 여행업계와 협업하여 판매 가능 상품으로 연계하고자 함.

행사 개요

- 행사명 : 2026 홍콩/선전 K-관광 로드쇼
- 기간 : (홍콩)2026. 3. 11.(수), 10:00~15:00
(선전)2026. 3. 12.(목), 14:00~20:00
- 장소 : (홍콩)리츠 칼튼 호텔, (선전)쉐라톤호텔
- 소요예산 : 금1,900천원(금일백구십만원) 정도
- 참가규모 : (홍콩)120명 내외, (선전)250명 내외
- 주요내용
 - 해외 여행업계 대상 전주 관광콘텐츠 홍보 및 B2B 상담
 - 현지 바이어·여행사·OTA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향후 공동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협력 기반 마련

세부 추진 계획

□ 출장개요

- 출장일정 : 2026. 3. 10.(화) ~ 2026. 3. 13.(금) / 3박 4일
- 출 장 자 : 이** 주임 총 1명
 - ※ (전북문화관광재단) 2명 예정(미정)
- 주요활동
 - 사전 매칭 기반 상담 예약 시스템(PSA)을 활용한 B2B 상담 진행
 - 한국관광 설명회 홍보 PT 참가(미정)
 - 행사장 내 K-콘텐츠 홍보존 참여(미정)

주요 일정

일차	출발지	도착지	방문장소	업무수행내용
3. 10 (1일차)	인천	홍콩	-	출국, 현지 도착 및 호텔이동
3. 11 (2일차)	-	-	홍콩 리츠 칼튼	- 해외 여행업계 대상 전주 관광콘텐츠 홍보 및 B2B 상담 - 현지 바이어·여행사·OTA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향후 공동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협력 기반 마련
3. 11 (2일차)	홍콩	선전	-	선전 도착 및 호텔이동
3. 12 (3일차)	-	-	선전시 쉐라톤호텔	- 해외 여행업계 대상 전주 관광콘텐츠 홍보 및 B2B 상담 - 현지 바이어·여행사·OTA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향후 공동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협력 기반 마련
3. 13 (4일차)	선전	인천	-	귀국

금후계획

- 공무국외허가 신청 : 2026. 2. 10.
- 공무국외출장허가심사위원회 운영 : 2026. 2. 11.
- 홍콩·선전 K-관광 로드쇼 참가 : 2026. 3. 10. ~ 3. 13.
- 결과보고서 제출 : 2026. 3월 중

기대효과

- 홍콩·중국 주요 여행업계 및 OTA와의 직접 B2B 상담을 통해 전주 관광콘텐츠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
- 현지 바이어·여행사·OTA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장기 관광객 유치 협력 기반 마련
- 수도권 중심 관광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여 전주 방문 수요 확대 및 숙박·음식·관광 연관 산업 전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사업비 : 금1,900천원(금일백구십만원) 정도
- 지출항목별 예산내역
 - 전주관광재단 사업, 관광마케팅팀 사업, 국·내외박람회 운영.
- 예산지출계획 (단위: 원)

구분	세목	금액	산출내역
여비	체제비 (숙박비·일비·식비)	1,027,530	-체제비/숙박비 (\$176x1일)+(\$106x2일)x1실=570,360 -체제비/일비 \$30x4일=176,400 -체제비/식비 (\$81x1일)+(\$44x2일)+(\$22x1일)=280,770
	교통비 (여행자보험 추가)	696,170	-항공료 300,000(인천-홍콩)+400,000(선전-인천)=600,000 -교통비 40,000(공항리무진)x2회+\$11(홍콩-선전 기차표)=96,170
일반 운영비	행사운영비	152,300	-EMS항공운송비 2,300(포장비)+150,000(운송비)=152,300
계		1,876,000	

※ \$1 = 1,470원(2026.02.09. 기준) 상기 금액은 달러환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재)전주관광재단 여비규정

- 제11조(국외여비) ① 국외여행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지급구분은 [별표2]와 같다.
- ② 국외여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하며, 국외훈련 . 연수 . 시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주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별표 2]

구 분	여비지급 구분	비 고
대표이사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 라목 해당자	
사무국장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	
팀장이하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	

- 주 : 국가 및 도시등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개정 2021. 5. 25.>

국외 여비 지급표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	60	실비(상한액: 471)	186
	나	60	실비(상한액: 422)	136
	다	60	실비(상한액: 271)	102
	라	60	실비(상한액: 216)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50	실비(상한액: 389)	160
	나	50	실비(상한액: 289)	117
	다	50	실비(상한액: 215)	87
	라	50	실비(상한액: 161)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40	실비(상한액: 282)	133
	나	40	실비(상한액: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162)	72
	라	40	실비(상한액: 108)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6. 삭제 <2021. 5. 25.>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